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986호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733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 2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67호 도시관리계획(장고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71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73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13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7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 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95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2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9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0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0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3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08호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10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11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3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12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3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18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3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20호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 4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22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녹지, 도로) 사업 실시계획 공고·열람 ····· 41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431호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 44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52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53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9

회 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조 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733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명칭,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지원대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67호

도시관리계획(장고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장고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고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8), 서구 공원녹지과(032-560-480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1.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공원: 장고개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7번지 일원
3. 면 적 : 4,278㎡
4. 도시계획시설(장고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1]
5.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 1]

도시관리계획(장고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7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4,667	1,576	1	40	40	38	4,278	1,427	1	40	40	20	감) 389㎡
공원시설	시 설 계		1,576	1,576	1	40	40	38	1,427	1,427	1	40	40	20	감) 149㎡
	기반시설	소계	970	970	-	-	-	-	896	896	-	-	-	-	감) 74㎡
		도로	789	789	-	-	-	-	771	771	-	-	-	-	감) 18㎡
		광장	181	181	-	-	-	-	125	125	-	-	-	-	감) 56㎡
	조경시설		11	11	-	-	-	1	-	-	-	-	-	-	감) 11㎡
	휴양시설		109	109	-	-	-	17	70	70	-	-	-	7	감) 39㎡
	유희시설		318	318	-	-	-	6	311	311	-	-	-	5	감) 7㎡
	운동시설		108	108	-	-	-	10	90	90	-	-	-	5	감) 18㎡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60	60	-	40	40	-	60	60	-	40	40	-	-
	관리시설		-	-	-	-	-	4	-	-	-	-	-	3	감) 1기
녹지 및 기타			3,091	-	-	-	-	-	2,851	-	-	-	-	-	녹지율: 66.7%
시설율(%) (법정 60%이하)			(1,576㎡ ÷ 4,667㎡) × 100 = 33.8%						(1,427㎡ ÷ 4,278㎡) × 100 = 33.3%						
건폐율(%) (법정 5%이하)			(40㎡ ÷ 4,667㎡) × 100 = 0.86%						(40㎡ ÷ 4,278㎡) × 100 = 0.94%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	**4,667**	**1,576**	**1**	**40**	**40**	**38**	-	**4,278**	**1,427**	**1**	**40**	**40**	**20**	**감) 149㎡**
기반시설	**계**	-	**970**	**970**	-	-	-	-	-	**896**	**896**	-	-	-	-	**감) 74㎡**
	도로	-	789	789	-	-	-	-	-	771	771	-	-	-	-	감) 18㎡
	광장	가	181	181	-	-	-	-	가	125	125	-	-	-	-	감) 56㎡
	광장1	가-1	(131)	(131)	-	-	-	-	가-1	(70)	(70)	-	-	-	-	
	광장2	가-2	(50)	(50)	-	-	-	-	가-2	(55)	(55)	-	-	-	-	
조경시설	**계**	-	**11**	**11**	-	-	-	**1**	-	-	-	-	-	-	-	**감) 11㎡**
	조형물	가	11	11	-	-	-	1	-	-	-	-	-	-	-	감) 11㎡
휴양시설	**계**	-	**109**	**109**	-	-	-	**17**	-	**70**	**70**	-	-	-	**7**	**감) 39㎡**
	쉼터	나	109	109	-	-	-	-	나	70	70	-	-	-	-	감) 39㎡
	쉼터1	나-1	(51)	(51)	-	-	-	-	나-1	(27)	(27)	-	-	-	-	
	쉼터2	나-2	(19)	(19)	-	-	-	-	나-2	(5)	(5)	-	-	-	-	
	쉼터3	나-3	(21)	(21)	-	-	-	-	나-3	(14)	(14)	-	-	-	-	
	쉼터4	나-4	(18)	(18)	-	-	-	-	나-4	(14)	(14)	-	-	-	-	
	쉼터5	-	-	-	-	-	-	-	나-5	(5)	(5)	-	-	-	-	
	쉼터6	-	-	-	-	-	-	-	나-6	(5)	(5)	-	-	-	-	
	파고라	①	-	-	-	-	-	3	①	-	-	-	-	-	2	감) 1기
	원형의자	-	-	-	-	-	-	-	②	-	-	-	-	-	2	증) 2기
	앉음벽	-	-	-	-	-	-	-	③	-	-	-	-	-	3	증) 3기
	등의자	②	-	-	-	-	-	13	-	-	-	-	-	-	-	감) 13기
	평상	③	-	-	-	-	-	1	-	-	-	-	-	-	-	감) 1기
유희시설	**계**	-	**318**	**318**	-	-	-	**6**		**311**	**311**	-	-	-	**5**	**감) 7㎡**
	어린이놀이터	다	318	318	-	-	-	-	다-1	260	260	-	-	-	-	
	모래사장	-	-	-	-	-	-	-	다-2	51	51	-	-	-	-	
	조합놀이대	④	-	-	-	-	-	1	-	-	-	-	-	-	1	
	그네	⑤	-	-	-	-	-	1	-	-	-	-	-	-	1	
	시소	⑥	-	-	-	-	-	1	-	-	-	-	-	-	1	
	흔들놀이	⑦	-	-	-	-		3	-	-	-	-	-	-	2	감) 1기
운동시설	**계**	-	**108**	**108**	-	-	-	**10**	-	**90**	**90**	-	-	-	**5**	**감) 18㎡**
	체력단련장	라	108	108	-	-	-	-	라	90	90	-	-	-	-	
	체력단련장1	라-1	(10)	(10)	-	-	-	-	-	-	-	-	-	-	-	
	체력단련장2	라-2	(16)	(16)	-	-	-	-	-	-	-	-	-	-	-	
	체력단련장3	라-3	(17)	(17)	-	-	-	-	-	-	-	-	-	-	-	
	체력단련장4	라-4	(16)	(16)	-	-	-	-	-	-	-	-	-	-	-	
	체력단련장5	라-5	(19)	(19)	-	-	-	-	-	-	-	-	-	-	-	
	체력단련장6	라-6	(16)	(16)	-	-	-	-	-	-	-	-	-	-	-	
	체력단련장7	라-7	(14)	(14)	-	-	-	-	-	-	-	-	-	-	-	
	체력단련시설	⑧	-	-	-	-	-	9	-	-	-	-	-	-	5	감) 4기
	평행봉	⑨	-	-	-	-	-	1	-	-	-	-	-	-	-	감) 1기
편익시설	**계**	-	**60**	**60**	**1**	**40**	**40**	-	-	**60**	**60**	**1**	**40**	**40**	-	
	화장실	마	60	60	**1**	**40**	**40**	-	마	60	60	1	40	40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 면적 (㎡)	건축물 연 면적 (㎡)	공작물 (기)	부호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 면적 (㎡)	건축물 연 면적 (㎡)	공작물 (기)	
관리 시설	**계**	-	-	-	-	-	-	**4**	-	-	-	-	-	-	**3**	**감) 1기**
	안내판	⑩	-	-	-	-	-	4	⑧	-	-	-	-	-	3	
녹지 및 기타	**계**	-	**3,091**	-	-	-	-	-	-	**2,851**	-	-	-	-	-	**감) 240㎡**
	녹지	-	3,091	-	-	-	-	-	-	2,851	-	-	-	-	-	감) 240㎡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268**	**789**				**감) 18㎡**
변경					**234**	**771**				
당초	소로	3	1	4	74	296	진입로	남측경계	북동측경계	감) 12㎡
변경	소로	3	1	4	71	284	진입로	남측경계	북동측경계	
당초	소로	3	2	2.5	108	270	산책로	남측경계	소로3-1	감) 21㎡
변경	소로	3	2	2.2~3.8	83	249	산책로	광장1	소로3-1	
당초	소로	3	3	2.5	86	215	산책로	소로3-1	소로3-1	증) 19㎡
변경	소로	3	3	2.5~3.5	78	234	산책로	소로3-1	소로3-1	
당초	소로	3	4	2	4	8	진입로	남측경계	소로3-3	감) 4㎡
변경	소로	3	4	2	2	4	진입로	남측경계	소로3-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71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1. 11. 22.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

○ 면적: 21,92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마련

- 급속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증가로 노인복지 문제 대두
- 노인 의료 복지 및 의료 수요의 팽창에 대한 선도적 대응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병상규모 약 860베드, 고용효과 1,300명 이상

○ 기훼손 및 난잡한 주변환경 개선

- 표고 65미터 이하의 난잡한(쓰레기 집하 및 개 사육 등) 구역의 도시환경 개선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성명: 김 홍 용

○ 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6. 2. 1. ~ 2021.12.31.
- 변경: 2016. 2. 1. ~ 2022.12.31.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21,926	100.0	
기타시설용지	11,732	53.5	
의료시설	11,477	52.3	
지원용지	255	1.2	
기반시설용지	10,194	46.5	
도 로	4,432	20.3	
주 차 장	480	2.2	
공원녹지	5,282	24.0	
완충녹지	660	3.0	
경관녹지	3,422	15.5	
소 공 원	1,200	5.5	
저 류 시 설	(202)	(0.9)	완충녹지에 중복 결정(지하)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65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공영개발과, ☎ 032-450-8363)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Ⅱ.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마련
- 급속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증가로 노인복지 문제 대두
- 노인 의료 복지 및 의료 수요의 팽창에 대한 선도적 대응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병상규모 약 860베드, 고용효과 1,300명 이상

○ 기훼손 및 난잡한 주변환경 개선
- 표고 65미터 이하의 난잡한(쓰레기 집하 및 개 사육 등) 구역의 도시환경 개선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

○ 면적: 21,926㎡

4. 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김 홍 용

○ 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5. 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6. 2. 1. ~ 2021.12.31.
- 변경: 2016. 2. 1. ~ 2022.12.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 없음)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65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공영개발과, ☎ 032-450-8363)

○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73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18호(2019.12.30.)의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된 내용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변경승인 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 032-440-48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연월일: 2021년 11월 22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혁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7층 B동)

3. 매립목적: 공공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미추홀구 학익동 723일원(연안교 상부)
   나. 면적: 52,339㎡(공공시설용지 29,345㎡, 그 밖의 시설용지 22,994㎡)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19. 12. 30.(매립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효율적 토지이용 및 합리적 교통동선 확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변경사항

(당초) 공공시설용지(도로 3,467㎡, 녹지 8,720㎡, 유수지 17,158㎡)

(변경) 공공시설용지(도로 1,548㎡, 녹지10,639㎡, 유수지 17,158㎡)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생략

(인천광역시청 해양항만과에 갖추어 놓음)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붙임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붙임2)

《별첨》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인가조건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38호선) 변경에(연장감소 185m) 따른 아암대로(광로3-4호선) 추가차로 확보 및 공공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38호선·소로3-1호선·광로2-9호선, 녹지: 완충녹지) 조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339	-	52,339	100.0%	
준공업지역	42,244	감)17,927	24,317	46.5%	
자연녹지지역	10,095	증)17,927	28,022	53.5%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24,317	400%이하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및 현황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28,022	80%이하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9	50 (50~53)	주간선도로	2,700	대1-5	광3-5	일반도로	-	1969.11.3. (건고637호)	·완화차로
기정	중로	2	938	16	집산도로	239	광2-9	광3-4	일반도로	-	2018.5.28.(인고 제2018-119호)	·유수지와 중복 결정 -지상675㎡
변경	중로	2	938	16	집산도로	54	물류용지	광3-4	일반도로	-	2018.5.28.(인고 제2018-119호)	·유수지와 중복 결정 -지상675㎡
신설	소로	3	1	6 (4~8)	특수도로	171	광2-9	완충녹지	보행자전용	-	-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938	변경 없음	◦ 연장 변경(감 185m) - 239m → 54m	◦ 통과교통 분산 및 물류창고의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	소로3-1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장 171m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을 통하여 완충녹지 접근성향상 및 보행안전확보,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공간시설

가.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8,720	증)1,919	10,639	2018.5.28.(인고 제2018-119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 면적 변경(증 1,919㎡) - 8,720㎡ → 10,639㎡	◦ 중로2-938 연장축소 및 물류유통용지 통합에 따른 완충녹지면적 증가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339	-	52,339	100.0%	
준공업지역	42,244	감)17,927	24,317	46.5%	
자연녹지지역	10,095	증)17,927	28,022	53.5%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24,317	400%이하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및 현황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28,022	80%이하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방재시설 (변경 없음)

나.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9	50 (50~53)	주간선도로	2,700	대1-5	광3-5	일반도로	-	1969.11.3. (건고637호)	·완화차로
기정	중로	2	938	16	집산도로	239	광2-9	광3-4	일반도로	-	2018.5.28.(인고 제2018-119호)	·유수지와 중복 결정 -지상675㎡
변경	중로	2	938	16	집산도로	54	물류용지	광3-4	일반도로	-	2018.5.28.(인고 제2018-119호)	·유수지와 중복 결정 -지상675㎡
신설	소로	3	1	6 (4~8)	특수도로	171	광2-9	완충녹지	보행자전용	-	-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938	변경 없음	◦ 연장 변경(감 185m) - 239m → 54m	◦ 통과교통 분산 및 물류창고의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	소로3-1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장 171m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을 통하여 완충녹지 접근성향상 및 보행안전확보,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공간시설

(1)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8,720	증)1,919	10,639	2018.5.28.(인고 제2018-119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 면적 변경(증 1,919㎡) - 8,720㎡ → 10,639㎡	◦ 중로2-938 연장축소 및 물류유통용지 통합에 따른 완충녹지면적 증가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물류유통용지(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최소대지규모	1,65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2,994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	-
A1	A1	14,970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	준공업지역
A2	A2	8,024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7,090	준공업지역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934	자연녹지지역

가. 물류유통용지(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최소대지규모	1,65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2,994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22,994	-
A1	A1	22,994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22,994	준공업지역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물류유통용지(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용도	허용	■ 물류유통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 게임제공업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 물류유통 관련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용도	허용	■ 물류유통 용도지원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골프연습장 제외)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남측 축항대로 전면도로변 3m - 중로 2-293호선 전면도로변 3m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A2	A2	용도	허용	준공업지역	■ 물류유통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 게임제공업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 물류유통 관련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A2	A2	용도	허용	준공업지역	■ 물류유통 용도지원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골프연습장 제외)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자연녹지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준공업지역	· 7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용적률		준공업지역	· 400% 이하
				자연녹지지역	· 80% 이하
		높 이		준공업지역	· 6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남측 축항대로 전면도로변 3m - 중로 2-293호선 전면도로변 3m

가. 물류유통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용도	허용	■ 물류유통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 게임제공업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용도	허용	■ 물류유통 관련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물류유통 용도지원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골프연습장 제외)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남측 축항대로 전면도로변 3m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A1~A2	A1~A2	동선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 주차장은 건축물 측면이나 후면부에 설치하고 도로와 면하는 경우 식재로 차폐하여 도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함
		경관		· 가로변의 경관향상을 위한 축항대로 전면부 건축한계선에 생울타리(1.2m이하)로 가로경관형성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보행통로 조성 · 도로에 면하여 주차장 설치시 식재로 차폐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동선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불허구간	·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 주차장은 건축물 측면이나 후면부에 설치하고 도로와 면하는 경우 식재로 차폐하여 도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함
		경관		· 가로변의 경관향상을 위한 축항대로 전면부 건축한계선에 생울타리(1.2m이하)로 가로경관형성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보행통로 조성 · 도로에 면하여 주차장 설치시 식재로 차폐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연안교 상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2-928, 소로3-1, 광로2-9, 광로3-4)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가. 중로2-938 공유수면 내

○ 면적: (당초) 5,391㎡ (공유수면: 4,142㎡)
(변경) 900㎡ (공유수면: 900㎡)

○ 규모: (당초) 중로2-938호선 (B=16m, L=244m)
(변경) 중로2-938호선 (B=16m, L=54m)

나. 소로3-1 공유수면 내

○ 면적: 1,163㎡ (공유수면: 1,163㎡)

○ 규모: 소로3-1호선 (B=6m(4~8m), L=171m)

다. 광로2-9(축항대로) 공유수면 외

○ 면적: 611㎡

○ 규모: 광로2-9호선 (B=5.5~9.3m, L=83m)

라. 광로3-4(아암대로) 공유수면 외

○ 면적: 2,400㎡

○ 규모: 광로3-4호선 (B=8m, L=29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혁 종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교보타워, 7층 B동)

※ (중로3-938호선) 사업시행자 변경됨

[당초] 승주종합개발 주식회사 주 현 응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변경)승인일

※ (중로2-938호선) 당초 2019. 12. 30.

○ 준공예정일: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중로2-938호선】												
1	-	-	-	-	900	-	-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조혁○	매립면허 취득자	공유수면
【소로3-1호선】												
1	-	-	-	-	1,163	-	-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조혁○	매립면허 취득자	공유수면
【광로2-9호선(축항대로)】												
1	-	-	-	-	164	-	-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조혁○	매립면허 취득자	공유수면
2	미추홀구 학익동	722	도로	12,741	437	-	인천 시장	-	-	-	-	-
3	중구 신흥동	35	도로	16,672	10	-	기재부 장관	-	-	-	-	-
【광로3-4호선(아암대로)】												
1	미추홀구 용현동	627 -24	제방	30,229	2,345	-	해수부 장관	-	-	-	-	-
2	미추홀구 학익동	722	도로	12,741	55	-	인천 시장	-	-	-	-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조건》

○ 소3-1호선, 중2-938호선은 유지관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이 준공 전 협의를 거쳐야 함

○ 광2-호선, 광3-4호선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 및 종합건설본부 이관대상이며 준공검사 전 해당 시설물 이관, 유지관리 등과 관련 사전협의 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 (녹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연안교 상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완충녹지)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당초) 8,720㎡ (공유수면: 8,720㎡)
(변경) 10,639㎡ (공유수면: 10,63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 성명: 승주종합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현 응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5(하나빌딩, 5층)

[변경]

○ 성명: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혁 종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교보타워, 7층 B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9. 12. 30.

○ 준공예정일: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	-	-	-	10,639	-	-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조혁○	매립면허 취득자	공유수면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실시계획인가 조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우범화 지대 예방을 위한 보행자도로 조명(간접등, 정원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7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 체 명	변경사항(소재지)		주된 사업	대표자
		변경 전	변경 후		
제 2019-0-인천광역시-29호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인천청년광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13번길 2, 202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5, 5층 사임당 빌딩 (십정동)**	교육사업 및 청년의제연구	이정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95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97-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 명칭: 인천그린에너지

3.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50,747㎡ 중 (2구역 46,157.2㎡)

- 1구역: 4,589.8㎡(남측 사면부지)
- 2구역: 46,157.2㎡(액화수소 생산설비 설치부지)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아이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경열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후생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3. 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4,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별첨]

○ 토지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1구역	2구역		
1	원창동	97-29	잡	31,982.0	31,982.0		31,982.0	아이지이(주)	
2	원창동	175-4	장	3,812.0	2,178.7		2,178.7	기획재정부	
3	원창동	382-5	잡	2,994.7	2,994.7	122.5	2,872.2	아이지이(주)	
4	석남동	224-22	잡	3,428.0	3,428.0		3,428.0	아이지이(주)	
5	석남동	산139-17	임	4,989.0	4,715.6	4,191.5	524.1	아이지이(주)	
6	석남동	산139-18	임	5,448.0	5,448.0	275.8	5,172.2	아이지이(주)	
합계				52,653.7	50,747.0	4,589.8	46,157.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9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1. 11. 22.~2021. 12. 6.(14일간)

2. 처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만석건설산업(주) (조성완)	건축공사업 (01-345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68, 2층 2호(왕길동)	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 (2019년도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영업정지 6개월 (2021. 7. 8.~ 2022. 1. 7.)	2021. 7. 7.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0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1. 11. 22.~2021. 12. 6.(14일간)

2. 처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자
한국예지종합건설(주) (김득현,박찬진)	건축 공사업 (05-067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12번길 43, 201호 (검암동, 효제당)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1. 9. 3 .~ 2022. 2. 2.)	2021. 9. 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0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말소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말소일자	주관 부서	비 고
제2009-0-인천광역시-25호 (2009.05.25.)	우리다함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6번길9 .지층(남촌동)	원용관	-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 - 장애인 직업소개소 운영 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21.11.18.	장 애 인 복 지 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08호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11. 18.(목) ~ 2021. 11. 26.(금)
2.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
3. 공고내용

1.처분의 제목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 실시 통지		
2.당사자	상 호 (대표자)	대주알디오㈜(유병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7, B동333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위반		
4.처분내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5.법적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		
6.고지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전문인력 2인)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 실시 통지		
7.청문일시/장소		2021. 11. 26.(금) 14:00/인천시청 본관 지하 어학실 제1강의실		
8.기타(문의처)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최다빈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연락처	032-440-4599		
	의견제출기한	2021. 11. 26.(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취소 할 예정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10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상호명 : ㈜양지종합건설
2. 대표자 : 나판수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12, 1동 701호(청천동)
4.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5-0673)
5. 처분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
7. 예정된 처분 : 등록말소
8. 청문일시 : 2021. 12. 20.(월) 14:00
9.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10. 공고기간: 2021. 11. 22.~2021. 12. 6.(15일간)
11. 기타고지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11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상호명: ㈜새늘종합건설
2. 대표자: 김성곤
3.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11-1, 3층(구월동,재경빌딩)
4.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4-0685)
5.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 미보완
6.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7. 예정된 처분: 등록말소
8. 청문일시: 2021. 12. 21.(화) 14:00
9.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10. 공고기간: 2021. 11. 22.~2021. 12. 6.(15일간)
11. 기타고지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12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상호명: ㈜더경종합건설
2. 대표자: 채규병
3.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201동 4703호 (경서동, 청라롯데캐슬오피스텔)
4. 처분업종: 건축공사업(10-1611)
5. 처분사유:「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8의2호
7. 예정된 처분: 등록말소
8. 청문일시: 2021. 12. 21.(화) 10:00
9.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10. 공고기간: 2021. 11. 22.~2021. 12. 6.(15일간)
11. 기타고지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1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백령엔지니어링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1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8호)	마윤근	2018. 12. 10.	기술인력 변경	김나래 [대기환경기사] **[해임]**	홍재연 [대기환경기사] **[선임]**
				홍재연 [수질환경기사] **[해임]**	임부택 [수질환경기사] **[선임]**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20호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22.

인천광역시장

1. 계획개요

가. 계 획 명 :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전역 (1,063.1㎢)

다. 목표년도 : 2040년

라. 수립권자 : 인천광역시장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1. 11. 22. ~ 2021. 12. 6. (15일간)

나. 공개장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11. 22. ~ 2021. 12. 6. (15일간)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 참조) 작성 후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에 제출 [E-mail : swnoh@korea.kr, FAX : 032-440-8718]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식.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822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녹지, 도로) 사업 실시계획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녹지, 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녹지, 도로)

○ 명칭: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8,047㎡

○ 규모: 38,000㎥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별첨]

○ 토지조서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1	석남동	159	공	439.0	2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	189-47	〃	22,192.0	2,743.0	〃	
3	〃	219-1	〃	1,512.0	522.0	〃	
4	〃	219-4	〃	10,043.0	3,118.0	인천광역시장	
5	〃	219-6	〃	8,442.0	1,185.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6	〃	431-17	〃	758.0	355.0	기획재정부	
7	〃	158-5	도	460.0	5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8	〃	162	〃	353.0	26.0	인천광역시장	
6	〃	219-30	〃	3,143.0	24.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합계				47,342.0	8,047.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431호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46조,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변경을 위해 그 내용을 사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및 서구 도시계획과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2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
다.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라. 면 적 : 75,119㎡
마. 사업기간 : 2001. 1. 29. ~ 2021. 12. 31.

2. 주요 변경내용 (세부내용 공람도서 참조)

가. 사업면적 변경
1) 내용 : 당초 A=75,119.0㎡ → 변경 A=74,532.9㎡

2) 사유 : 사업완료를 위한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 변동사항 반영

나. 사업비 변경

1) 내용 : 당초 11,650백만원 → 변경 15,424백만원

2) 사유 : 수입 및 지출(사업수지)에 따른 사업비 변경

다. 사업기간 변경

1) 내용 : 당초 2001. 1. 29. ~ 2021. 12. 31. → 변경 2001. 1. 29. ~ 2022. 3. 31.

2) 사유 : 환지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 부족

라. 환지계획

1) 내용 : 환지면적 변경 등

2) 사유 : 사업완료를 위한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 변동사항 반영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 2021. 11. 22. ~ 2021. 12. 13.

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가. 공람장소

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032-440-5182)

2)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032-560-5773)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52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대상인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명확히 하고, 보조금 제외대상 중소기업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환경개선자금을 오염방지 및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대상 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함. (안 제2조제1항)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변경함.(안 제2조의2제1호)

다. 대기업 계열기업군 중소기업의 보조금 제외대상 규정을 삭제함. (안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대기보전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6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고은영(전화: 032-440-3503, 팩스: 032-440-8748, 이메일: hellok@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를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을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으로, “사업자로서”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으로,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악취방지법」제8조제2항”을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를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개선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사업진도보고서 :”를 “사업진도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완료보고서 :”를 “사업완료보고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
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
1.「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이하같다) 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이하 같다----------
2.「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3.「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
4.「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이하 같다----------
5.「악취방지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5.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자금) 제2조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의 융자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자금) 제2조에 따른 ----------

다.	--.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1. ----------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기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4. 그 밖에 ---------- --
제6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
1. 사업진도보고서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최초로 대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	1. 사업진도보고서: ----------
2. 사업완료보고서 : 방지시설 준공 후 2월 이내	2. 사업완료보고서: ----------
제7조(보조금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사후 관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변경사항의 통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의 업체명·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승계를 받은 자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사항의 통보) ---------- 지체 없이 ----------.
제9조(보조금 제외 대상)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서 규정한 대기업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1. 6. 9.)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한국환경산업기술원)

<table>
<tr><th>개정 전(2020.1.23.)</th><th>개정 후(2020.12.18.)</th></tr>
<tr><td>제4조(지원대상) ① 융자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는 각 사업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
2. 환경개선자금 : 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 우선 지원)
3.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중소, 중견기업
4.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중소, 중견, 대기업(중소기업 우선 지원)
② 지원 사업과 분야 별 지원대상 및 융자금 사용용도는 [별표 1]과 같다.</td><td>제4조(지원대상) ① 융자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table><tr><th>분야</th><th>세부분야</th><th>구분</th><th>지원대상자</th></tr><tr><td rowspan="2">환경산업</td><td>시설설치자금</td><td>시설</td><td rowspan="2">○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제3조 제3호)</td></tr><tr><td>성장기반자금</td><td>운전</td></tr><tr><td rowspan="4">녹색전환</td><td>오염방지시설자금</td><td rowspan="3">시설</td><td rowspan="4">○ 중소·중견 기업
- 제3조에 따른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td></tr><tr><td>화학물질시설자금</td></tr><tr><td>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td></tr><tr><td>녹색전환운전자금</td><td>운전</td></tr></table>
2.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table><tr><th>분야</th><th>세부분야</th><th>구분</th><th>지원대상자</th></tr><tr><td>청정대기</td><td>미세먼지시설자금</td><td>시설</td><td>○ 미세먼지 다량배출 시멘트업종</td></tr></table>
② 융자금은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 한다.</td></tr>
</table>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시행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 융자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융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개정 2016.5.27)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시행 2014. 8. 1.)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개정 2014.8.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적 예산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존 보조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보조대상 신설과「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세부화에 따라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53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2. 1. 1.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범위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확대되어 지원 상한금액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한금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제2호 및 3호)

나. 학교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10조제2항5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전현수(전화번호 : 032-720-2516, 전자메일 : jhs80504@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및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다중, 다가구”를 “다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학교”를 “학교(「초·중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 500만원(다만, 2가구인 경우는 최대 200만원, 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생 략)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100만원	2. ---------- 다중----------
<신 설>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 500만원(다만, 2가구인 경우는 최대 200만원, 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0만원	5. 학교(「초·중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급수공사(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정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2. 수돗물 수질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아

파트, 연립, 다세대)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비용의지원) ①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의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50만원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100만원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대당 100만원

4.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0만원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상한금액을 150만원으로 한다.

④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가.「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시 비용추가 발생

1) 다가구주택 지원금액 : 지원 상한금액 500만원(단, 2세대인 경우는 최대 200만원, 3세대 이상인 경우는 2세대를 초과하는 세대당 60만원을 추가 보조)

※ 산정표

세대수	2	3	4	5	6	7 이상
최대지원금(만원)	200	260	320	380	440	500

2) 2020년 기준 다가구주택 지원 건수 조회

· 지원자 조회 - 다가구주택 지원 : 14건 / 지원금액 14백만원

·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 : 70백만원(56백만원 증액, 최대한도 500만원 적용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 검토 결과, 2020년 다가구주택 지원 신청 건수에 준하여 2021년에는 70백만원(56백만원 증액, 최대한도 500만원 적용시)이 예상되며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장 박 성 연